<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 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2010006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2.02.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13

www.augustin.co.kr

[생어거스틴]

정 보 공 개 서

(주)늘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늘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6길 7, 3층(반포동) 가맹본부 전화번호 Tel : 1599-2018 / Fax 02-532-9862

가맹사업부 전화번호 Tel: 1599-201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Ⅱ. 가맹본부의 『 생어거스틴』 가맹사업 현황	6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7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0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2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34
IX. 가맷본부의 직영점 혀홧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생어거스틴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6길 7, 3층(반포동)						
(주)늘솜	(조)는소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				Ŧ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20	2014.02.05	201	4.02.21	심지	18	1599-	-2018	02-532-9862
	법인등록번호	110	0111-5331684 አ		사업자동	등록번호	26	4-81-29823

● 당사는 현재 [발재반점]과 [생어거스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와 특수관계인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늘솜	생어거스틴 외 1개		초구 서래로6길 7, (반포동)
	심지용(대표이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임원)	사) 심주용(감사)	심지용	1599-2018	02-532-986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생어거스틴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생어거스틴	_
상 호	생어거스틴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 표)	Saint — Saint — AUGUSTIN — ASJAN CLISINE —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21465-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682,826	3,684,279	998,546	13,702,617	-43,256	25,538
2023년	5,330,162	4,757,834	572,327	14,055,429	-604,484	-426,219
2024년	4,330,969	4,297,877	33,092	12,290,297	-621,263	-539,235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직영점포함)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이름		사업경력		
관련여부	N =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14.02~현재	㈜늘솜 사내이사	사업총괄	
관련	심지용	2013.02~현재	㈜팬에프앤비 대표	생어거스틴 상암점 운영	

		004000 = 171	㈜생어거스틴에이	
		2013.03~현재	지 대표	사업총괄
		2022.03~현재	심지용 대표	부동산업 운영
		2013.04~2024.10	생어거스틴	생어거스틴 여의도점
		2013.04~2024.10	여의도점 대표	운영
		2014.02. ~ 현재	㈜늘솜 감사	회계 등 감사
관련	심주용	2014.03~현재	㈜늘솜에프씨 대표	사업총괄
		2022.03~현재	김주용 대표	부동산업 운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원수	직원수
	상근	비상근	그런구
2024년 12월 31일	1	1	13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영업표지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 부	㈜늘솜	20190808	발재 반점	2019.09~현재	중식 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생어거스틴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수령할 권리	출원일 2010.06.29 등록일 2011.11.21	출원번호 4120100016479 등록번호 4102214650000	㈜늘솜	2031.11.21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

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이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u>http://www.kipris.or.kr/</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생어거스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3년 01월 02일

2. 생어거스틴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생어거스틴은 가맹사업 시작일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늘솜에프앤비	생어거스틴	심지용	2009.04~2012.0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2 3 층
㈜늘솜에프앤 비	생어거스틴	심지용	2012.03~2013.05.22	서울시 서초구 서 초대로 33길 8(방배동)
㈜늘솜에프앤 비	생어거스틴	심지용	2013.05.23~2015.04.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 2 (서초동, 3 증)
㈜늘솜	생어거스틴	심지용	2015.04.30.~2015.11. 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 2 (서초동, 3 증)
㈜늘솜	생어거스틴	심지용	2015.11.01.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6길 7, 3층(반포동)

3. 가맹사업 업종

생어거스틴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응답표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생어거스틴	기타 외국식	애피타이저, 샐러드, 덮밥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국 및 16개 광역 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 개)

7) 63	2022.12.31		2023.12.31		2024.12.31	
△ 1≒	지역 <u> </u>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직영점	
전체	16	8	15	9	12	6
서울	8	6	8	6	5	4
부산	2		2	_	1	_
대구	_		_	_	_	_
인천	_		_	_	_	_

광주	1		1	_	1	_
대전	1		1	_	1	_
울산	_		_	_	_	_
세종	1		_	_	_	_
경기	3	2	3	2	3	1
강원	_		_	_	1	_
충북	_		_	1	_	1
충남	_		_	_	_	_
전북	_		_	_	_	_
전남	_		_	_	_	_
경북	_		_	_	_	_
경남	_		_	_	_	_
제주	_		-	_	_	_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생어거스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7	0	0	1	0	16
2023	16	_	_	1	_	15
2024	15	1	_	4	_	12

6. [생어거스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 [생어거스틴] 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민		생점/직영점의	수
, -	昌	8647	등록번호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 본부	㈜늘솜	발재반점	20190808	외식	1/0	1/0	1/0

^{*}웍앤박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4월에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생어거스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연평균 매출액(단위: 천원/부가세별도)							
지역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비고
		연평균	3.3㎡당	상한	3.3㎡당	하한	3.3㎡당	
전체	12	774,317	12,005	2,071,097	38,354	337,037	3,241	12곳 산정
서울	5	959,303	18,663	2,071,097	38,354	450,918	10,776	5곳 산정
부산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기	3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강원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제주		해당없음				_	_	5곳 미만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생어거스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2	3,64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는 직전 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별	기 간	지출	비용(단위 :	비고	
<u> 구</u> 문	기 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01 17
광고	(비공개)	41,947	41,947	0	손익계산서

● 위 금액은 당사의 작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의 내역이며, 이 금액은 당사의 가맹사업 중 『생어거스틴』, 『발재반점』 브랜드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으로 각 브랜드별 금액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어거스틴』 만을 위해 소요된 광고 및 판촉 비용은 상기 금액보다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국민은행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서래지점	서울시 서초구 서래로8길 6	1588-9999 02-595-08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에서 교부한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계약후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장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http://bank.kbstar.com)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1588-999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 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당사가 (주)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내용은 귀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 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생어거스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생어거스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มอ
가맹비	33,000	계약 체결 당일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일부 반환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가입비(가맹비의10%) -점포실사(가맹비의 30%)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 보·자료제공,노하우 전수, 운영교육,오픈 지원(가맹 비의 40%) -개점 전 조리/서비스교육

2)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가맹비	보증금	합계
신규 가맹자	33,000	0	33,000
기존 가맹점 양수자	22,000	0	22,0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132 ㎡ (40평) /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 대상	총 금 액	3.3 ㎡당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_	[151,250]	[3,781]	_	-					
인테리어		101,200	[2,530]							
간판		5,500	_	공급 시점에 따라 협의하	당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제작 및 공급 이후에는					
의/탁자	업체자율	8,800	_							
주방설비 및 집기		27,500	[688]							
초도물품	가맹본부	3,300	_	여 결정	반환될 수 없음					
초도식자재	별첨 2 참조	3,300	_							
POS	협력업체	1,650								
별도금액	자체 조달 및 가맹본부		냉난방기, 소방 기증설, 가스증 컴퓨터 등	매장상황 및 7 변동될 =	점주선택에 따라 수 있는 금액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m²당 (33만원,VAT포함)의 도면비, 감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협의합니다.

※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시공사항이므로 건물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 설비, 냉난방기 등에 유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변경의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 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점포 미보유 시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점포 보유 시 : 최소 점포 기준 99 ㎡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생어거스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한 내역은 첨부한 목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 바랍니다.	-1) 을 참고하시기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 바랍니다.	-1) 을 참고하시기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영업표지 변경 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II-1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영업표지 변경 시 /귀하와 협의하여	변경설치 된 이후에는 반 환되지 않음
포스	협력업체	월 1만 1천원	말일 당사에 지급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POS매출액의 3%	말일 당사에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관리비용으로 반환되 지 않음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Ⅶ-1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Ⅱ 경영 및 영업활돌 등에 대하 시원숙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가맹본부	상품결재금액의 8~11% [시행사: 협력업체]	매출 발생 익익월 (60일후)로열티 청구서에 반영	점주: 전체수수료(=결재금액 의 8~11%) 부담 본사: 상품권기획 비용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 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 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43조의1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수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

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겨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입비, 점포실사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가맹비(2200 만원, VAT 포함)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3300만원, VAT 포함)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생어거스틴]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생어거스틴]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라.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 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 습니다.
- 마.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생어거스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 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바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지정한 메뉴만 판매해야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개점 전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 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 행합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4-3)의 메뉴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71.71.01.71	당사 또는 당사의	당사 또는 당사의	
경쟁업체	지정업체로부터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1회 위반 : 구두경고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다른 가맹점	공급받은 상품 및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사업자	제품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 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본점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본점과 달리 기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합니다.

메뉴명	권장가격(원)	메뉴명	권장가격(원)
* SALAD *		* SOUP *	
얌운센 탈레	19,000	똠얌꿍	23,000
쏨땀	17,000	똠얌꿍 면추가	3,000
꿍넝마나오(타이새우샐러드)	16,000		
아스파라거스볶음	13,000		
얌느아양(그릴드비프샐러드)	26,000		
	* SIDE	DISH *	
모둠 플레이트	25,000	싸이끄럭 이싼	19,000
뽀삐아텃(야채춘권)	9,000	코코넛 타마린 치킨	16,000
텃만꿍	14,000	새우살 하가우	9,000
짜죠	9,000	팟팍루엄(모듬채소볶음)	22,000
가리비 해물그라탕	9,000	팍붕파이뎅(공심채볶음)	19,000
* NOODLE *			
왕새우 팟타이	19,000	타이칠리 누들	18,000
퍼싸오	18,000	미고랭	18,000
생어거스틴 누들	18,000	꾸웨이띠오 똠얌	15,000
퍼 보	12,000	꾸웨이띠오	12,000

해물누드수끼	12,000				
	* R	ICE *			
소고기 덮밥	18,000	까이쌉 랏 카오(바질닭고기덮밥)	16,000		
카이팔로 카우(통삼겹조림덮밥)	18,000	파인애플 볶음밥	15,000		
나시고랭	15,000	새우 게살 볶음밥	15,000		
생어거스틴 볶음밥	14,000				
	* THAI	CURRY *			
깽 키오 완 까이(치킨그린커리)	18,000	파냉 느어(소고기레드커리)	18,000		
꿍 팟 봉커리	34,000				
	* SHRIMP &	E SEAFOOD *			
꿍 텃 루엄(오리엔탈왕새우튀김)	37,000	꿍 텃 까띠암(갈릭쉬림프)	35,000		
베이퐁 토우	30,000	그린커리새우볶음	27,000		
타이칠리 해산물 볶음	30,000	코코넛새우볶음	27,000		
* CRAB *					
뿌 팟 봉커리	36,000	타이칠리 씨푸드	43,000		
* FISH *					
칠리 농어	35,000	피시소스 농어	35,000		
칠리 앤 샤워 피시커리	35,000				
	* B	EEF *			
느어 팟 남만호이	34,000	느어 픽타이담	34,000		
팟 카파오 느어	30,000	느어 팟 투엉억	20,000		
* PORK *		* CHICKEN *	*		
팟 카파오 무쌉(타이칠리 폭찹)	25,000	까이 팟 맷 마무엉(치킨캐슈넛)	27,000		
무 팟 남프릭파오	25,000	까이 쌈 롯(스윗앤사워치킨)	27,000		
		RAGE *			
청포도에이드	7,000	깔라만시에이드	7,000		
자몽에이드	7,000	오렌지에이드	7,000		
오렌지 주스	5,000	망고 주스	5,000		
제로콜라	3,000	코카콜라	3,000		
스프라이트	3,000	페리에	4,000		

루이보스 오렌지	4,000	스트로베리 홍차	4,000
히비스커스	4,000	얼그레이	4,000
원두 커피(ICE/HOT)	4,000	G7 베트남 커피(ICE/HOT)	4,000
	* BEEF	₹ *	
바이젠	7,000	아메리칸 페일 에일	8,000
필스너라거	7,000	아이피에이	8,000
브리티시 골든에일	7,000	다크에일	8,000
비어샘플러(177ml*6종)	22,000		
	* WIN	E *	
생어거스틴 쇼비뇽블랑	32,000	생어거스틴 그랑리제르바 까베르네쇼비뇽	58,000
생어거스틴 케이프 브랜드	48,000	생어거스틴 까베르네쇼비뇽	32,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아시안 레스트랑	생어거스틴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동선거리 1km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 성 → 가맹점사업자에 게 서면 통지 → 가맹 점사업자 합의 → 영 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 조정 완료 (신규점포 입점가능)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 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 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 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생어거스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상호)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 분
일반소매점	이두부야	밀키트(똠얌꿍.팟타이), 냉동볶음밥류, 커리소스 등	반조리상품

일반소매점	친츠	쌀국수면 외	반조리상품
일반소매점	크루아타이	통살새우패티.고기짜죠	반조리상품
유통판매점	(주)이랜드팜앤푸드(서울)	밀키트(똠얌꿍.팟타이), 냉동볶음밥류, 커리소스 등	반조리상품
유통판매점	룸서비스 파이브 강북점	통살새우패티	반조리상품
일반소매점	베트남 노상식당	통살새우패티	반조리상품
일반소매점	필마트 월배점	하가우	반조리상품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홈페이지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스토어팜	https://smartstore.naver.com /nsfnb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허닭	http://www.heodak.com/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프레시지	https://fresheasy.co.kr/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카카오톡스토어	https://store.kakao.com/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쿠팡	https://www.coupang.com/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티몬	https://www.tmon.co.kr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샵프리카	https://shopfreeca.afreecatv. com/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삼성웰스토리㈜	http://welstorymall.com/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11번가	www.11st.co.kr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위메프	https://front.wemakeprice.co m/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유니브스토어	www.univstore.com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온라인	㈜잇웨이브	https://smartstore.naver.com /thehanfood00?NaPm=ct%3 Dltfhbewz%7Cci%3Dshopn% 7Ctr%3Dsls%7Chk%3De1c68 f8e938c71eec01df00ef426f1 19bc50ce07%7Ctrx%3Dunde fined	밀키트류	반조리상품
-----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56%	42%	0%	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 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 상품 비중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비중)
2024	78%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 [생어거스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갱신시에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Α.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 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 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 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무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에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 5 조 영업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3.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④ 메뉴판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상품공급의 중단 ⑪ 로열티의 납입
- 4. 제 7 조제 2 항 기존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 5. 제 7 조제 3 항 실내장식,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6.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7.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8.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9. 제 18 조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10.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1.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12. 귀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②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③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⑤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⑥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다. **당사/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당사 또는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 ②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③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가.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 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 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라.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
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	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
조건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 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 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	교육수료 및

			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당사 메뉴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 전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의 :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생어거스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계약체결 시 협의 연속 2일 이상 휴무 시 당사 승인)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OPEN



- ※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 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	----------

점주 자율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十七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01.77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F 00/	50%		1. 대중매체광 고등 광고에 따
	서비스/상품광고	50%	(전체가맹점)	해비 게히 고그 、	라 필요시 분담 절차는 변동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광고 비 납부	
지역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 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 시행→종료 후 최 종분담금 확정	가맹점사업자 70%이상 동의시 또는 동의점주 대상 시행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상동	상동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지,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생어거스틴]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 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 해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 제 6 조 제 9 항(경업금지 의무) 또는 제 9 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를 위반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갑"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숲일천만원 (₩10,000,000 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제 13 조 제 1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당 20 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급격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가맹본부가 지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①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 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 ⑧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자는 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및 실제 지출한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보수를 승소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45~5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 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홈페이지문의,방문	7일~14일(변호사 및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인근10개 가맹점현황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2일	IV.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실측 및 도면 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
공사 착수	-공사 실시	30일	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5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되는 실비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 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상의 소요금액은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 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오디오 구입비용은 별도입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No.	방법	비고
1	정보공개서 및 가 맹계약서의 수령	귀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를 계약체결전 (정보공개서 14 일전, 가맹계약서 14 일전까지)에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선택방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후 귀하가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가맹거래사 or 변호사를 선택하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합니다.
3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4	자 문 확 인 서 수 령 (14 일 ->7 일 단 축 희망시)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거래사 or 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 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5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이 지난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년으로 한다.) ②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간판교체 비용 ②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①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부담비용비율	②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①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지급절차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생어거스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	메뉴 제조 방법/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60일(점주 협의 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신메뉴 교육 (개점 후)	메뉴 제조방법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신메뉴 출시 시 필수여부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서비스기 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교육

* 당사의 신메뉴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 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해당 메 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해당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서울 파이낸스점(광화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빌딩 B1
2	서울	사당 파스텔시티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1 (방배동, 444-3) 파스텔시티 4F
3	서울	김포공항롯데아울렛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방화동 886 외 6 필지) 롯데김포공항점 MF 층(지하 2F)
4	서울	서래마을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6 길 7, 3 층
5	충북	청주직영점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 원더아리아 청주점 1F
6	경기	파주프리미엄아울렛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00, 814호(파주프리미엄아울렛)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평균 영업 기간 (단위: 년, 개월)
2024	5년 8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2024	1,011,842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부가세증명원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99-201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2022~2023년

2023~2024년

[별첨2] 강제/권장 품목 및 주요품목 공급가격

1. 강제권장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 지정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또는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요품목 공급가격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란):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 4)가맹사업자의 부담
 -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9)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대표	(인)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서 수령날짜 및 가맹거래사 자문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로 고, 가맹계약서는 다.									일에 제공받 검토하였습니
		①그렇다		2	그렇지	않다			
2. 본인은 정보공개서 부터 자문을 받은 /			검토히	하기 위하여	가맹거라	/)	또는 변호사로
		①그렇다		2	그렇지	않다			
ž	20 년	<u> 월</u>	일	성명 :			Q	<u> </u>	